

## 행정사무감사 서면 답변서

질의의원	이만재 의원	소 속	평창군의회
답 변 자	민원봉사과장	일 자	2002. 12. 3
회 의	제100회 평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		
<p><b>&lt;질의요지&gt;</b></p> <p>2001-2002민원 1회방문 처리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실적 중.</p> <p>1.골재 선별장 및 야적장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p> <p>2.건축허가와 관련 공작물 설치기간 연장에 따른 민원심의처리결과.</p>			
<p><b>&lt;답변요지&gt;</b></p> <p>1.골재 선별장 및 야적장 농지전용 허가처리</p> <p>▶민원신청내역</p> <p>*위치:평창읍 상리 69-1번지(현림데미콘 공장 뒤 하천 건너편)</p> <p>*전용면적:5,904㎡</p> <p>*신청인:평창읍 하리 179-12 (주)현림데미콘대표 임천호</p> <p>▶심의결과</p> <p>*일자:2002.1.24</p> <p>*결과:농지전용 허가 결정</p> <p>*통보:2002.1.25</p> <p>*관련문서사본:별첨.</p> <p>2.건축허가와 관련 하천 공작물 설치기간 연장에 따른 심의</p> <p>▶민원신청내역</p> <p>*건의서 제출:2002.5.22 진부면 간평리.강상욱 외5명이 공작물 설치 기간 연장신청</p> <p>*신청사업명:진부면 간평리 575-3번지 일대 하천 공작물 설치 기간 연장</p> <p>*위치:진부면 간평리 575-3번지 일대</p> <p>▶평창군 조치사항</p> <p>*민원처리계획 수립:평창군청(2002년5월) -설치기간 연장 민원 수령.</p> <p>*민원조정위원회 개최통보:2002.5.30(2002년 6월3일오전9시,소회의실. 가결심의)</p> <p>▶결과통보</p> <p>*하천 공작물 설치 허가 연장 신청 통지 회신:2002.6.4</p> <p>*하천 공작물 설치 및 일시점용 기간 연장 허가:2002.6.12(김만겸)</p> <p>*하천 공작물 설치 및 일시점용 기간 연장 허가:2002.9.30(강상욱)</p> <p>*관련문서사본:별첨</p>			

정보통신망

# 농업기술센터

우 200-807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 전화 033-330-2551 / 전송 033-333-4436  
 농업경영과 파장: 백순규 담당: 김인섭 담당자 이상명

문서번호 농경51311-222

시행일자 2002. 1. 22. ( )

(경 유)

수 신 내부결재

참 조

보존기간	3	군수
공개여부	공개	
부군수	신 대 동	2002/01/22
농업기술	이 인 섭	농지관리담당 김 인 섭
농업경영	백 순 규	
기 안	이 인 섭	협조
심 사 자		심 사 일

## 제 목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 계획

1.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9조 관련입니다.

2.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1회방문 민원실무 종합심의회를 설치.운영하였으나 처리되지 않아(이견제시) 다음과 같이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 가. 개최일시 : 2002. 1. 24. 10:00-
- 나. 장 소 : 소회의실
- 다. 신청인 : 평창읍 하리 179-12 "(주)현림레미콘 대표 임현호"
- 라. 전용목적 : 골재선별장 및 야적장
- 마. 위 치 : 평창읍 상리 69-1번지 "5,904m"

붙임 :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자료 1부.

# 평 창 군 수

수신처 :

"HAPPY700평창 국민의 고향"

평창군

우232-807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전화(033) 330-2373 / 전송330-2246  
 처리부서: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과 (종합민원실) 담당:김인섭 실무자:이상명

문서번호 농경51311-2455  
 시행일자 2002. 1. 24.  
 경유

보존기간		소	장
공개여부			
과 장	농경과	이	인섭
담 당	김인섭		
기안자	이상명/4400		협조
심사자		심사일	

( 제 1 안 )  
 받 음 평창군 평창읍 하리 179-12  
 참 조 (주)현림레미콘 대표 임현호

제 목 농지전용허가사항 통보

귀사에서 신청하신 상리 69-1번지 5,904㎡ 농지전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농지법제36조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허가 하였음을 통보하오니 허가조건 이행에 철저를 기하시고, 허가증은 농지조성비 납입, 면허세 납부 후 평창읍사무소에서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농지전용허가조건 1부. 끝.

( 제 2 안 )

받 음 : 평창읍장  
 제 목 : 농지전용허가사항 통보

평창51311-2455(2001. 12.26)호로 전달한 농지전용허가신청에 대하여 농지법제3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농지전용허가 하였음을 통보하니, 허가조건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하시기 바라며, 허가증 원본은 농지조성비 납입, 면허세 부과등 각종 공과금 납부확인 후 교부하여야하며, 허가지 주변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1. 농지전용 허가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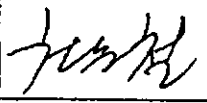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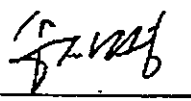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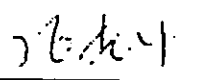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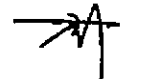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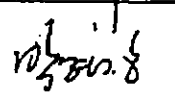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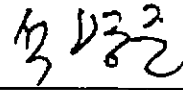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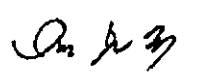
- 가.신 청 인 : 평창군 평창읍 하리 179-12번지 "(주)현림레미콘"
- 나.허 가 지 : 평창군 평창읍 상리 69-1번지 "5,904㎡"
- 다.허가내역 : 공장(골재선별장및야적장)
- 라.허가조건 : 침부 허가조건 성실히 이행.

붙임 : 농지전용허가증 1부. 끝.

평창군수

##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일시 : 2002. 1. 24 (목)
- 심의안건 : 농지전용허가신청
- 신청자 : (주)현림레미콘 대표 임현호

구 분	직 위	성 명	심의결과		서 명	비고
			적정	부적정		
위원장	부군수	신대송	○			
위원	기획실장	권순철	○			
"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	재무과장	김일래	○			
"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	건설과장	박현창	○			이의신청
"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자료

### □ 민원신청 내용

- 신청자 : 평창읍 하리 179-12번지 "(주)현림레미콘 대표 임현호"
- 신청내용 : 농지전용허가
- 신청사업 : 골재선별장 및 야적장
- 위치 : 평창읍 상리 69-1번지 (현림레미콘 공장 뒤 하천건너편)
- 전용면적 : 5,904㎡ (현 공장부지 3,500㎡중 골재야적장 2,600㎡)

### □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이유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실무종합심의회를 설치·운영 하였으나 처리(이견제시)되지 않음
  - 하천골재 채취에 따른 인력의 2개소 배치 및 세수감소

### □ 제시된 부적절한 사유

- 사업자 대표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상호 이해와 협조로 제반 준수사항 이행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사업시행에 따른 소음·비산먼지 등 지역주민과의 마찰 상존(농업경영과)
- 선별되지 않은 골재를 채취하기 때문에 선별규격(모래·자갈25mm/min. 40mm/min, 막자갈)을 판단할 수 없으며 막자갈로 반출시 현장(하천)에서 선별하여 반출시보다 최대 3.6배의 세수감소(건설과)
- 하천 선별장으로 인력을 이중 배치하여야 하므로 인력부족으로 관리가 어려움(건설과)

관련 법규	검토 부서	검토 결과	비고
골재채취법	건설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행법상 규제대상은 아니나 선별 및 파쇄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li> <li>○하천골재채취 예정지로 고시된 지역에서 골재를 채집 운반하여 골재선별시, 고시지역에서의 고시량 및 선별 규격(모래, 자갈 25mm/㎜, 40mm/㎜, 막자갈)에 따른 골재량을 판단할 수 없어 막자갈로 반출하는 것으로 판단 하여야 하므로 최대 3.6배의 새수 감소</li> <li>○선별장에서 확인 반출시는 확인인력의 부족에 따라 골재채취장의 관리가 불가능 함</li> </ul>	검토 대상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도시경제과	○공장등록변경사항 신고를 하여야 함	저촉 없음
건축법	"	○건축물 착공신고서 제출 후 사업시행하여야 함.	"
수질환경보전법	환경복지과	○사업시행전 폐수 토사유출 등 세부 방지계획을 수립 하여 협의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	"	○사업시행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필하여야 하며 신고시 주변 방진방 설치, 방진덮개, 세륜시설등 적절한 방지계획을 첨부하여야 함.	"
소음.진동규제법	"	○파쇄기등 10HP이상이면 소음.진동배출시설 신고를 필할 것.	"
농지법	농업경영과	○농지전용허가 대상이며 저촉사항 없음	"
농지관리위원회	평창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초 신청시 지역주민 의견을 무시한 신청으로 지역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강력히 표출하였으나</li> <li>○지역주민들을 상대로한 사업설명회등을 통하여 제반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시 상호 협조를 합의하는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의견제시</li> </ul>	"

##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자료

### □ 민원신청 내용

- 신청자 : 평창읍 하리 179-12번지 "(주)현림레미콘 대표 임현호"
- 신청내용 : 농지전용허가
- 신청사업 : 골재선별장 및 야적장
- 위치 : 평창읍 상리 69-1번지 (현림레미콘 공장 뒤 하천건너편)
- 전용면적 : 5,904㎡ (현 공장부지 3,500㎡ 중 골재야적장 2,600㎡)

### □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이유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실무종합심의회를 설치·운영 하였으나 처리(이건제시)되지 않음.
  - 하천골재 채취에 따른 인력의 2개소 배치 및 세수감소

### □ 제시된 부적절한 사유

- 사업자 대표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상호 이해와 협조로 제반 준수사항 이행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사업시행에 따른 소음·비산먼지 등 지역주민과의 마찰 상존(농업경영과)
- 선별되지 않은 골재를 채취하기 때문에 선별규격(모래·자갈25mm/mm, 40mm/mm, 막자갈)을 판단할 수 없으며 막자갈로 반출시 현장(하천)에서 선별하여 반출시보다 최대 3.6배의 세수감소(건설과)
- 하천·선별장으로 인력을 이중 배치하여야 하므로 인력부족으로 관리가 어려움(건설과)

□ 관련법 검토 주요내용

관련법규	검토부서	검토결과	비고
골재채취법	건설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행법상 규제대상은 아니나 선별 및 파쇄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li> <li>○하천골재채취 예정지로 고시된 지역에서 골재를 채집 운반하여 골재선별시, 고시지역에서의 고시량 및 선별 규격(모래, 자갈 25mm/㎜, 40mm/㎜, 막자갈)에 따른 골재량을 판단할 수 없어 막자갈로 반출하는 것으로 판단 하여야 하므로 최대 3.6배의 세수 감소</li> <li>○선별장에서 확인 반출시는 확인인력의 부족에 따라 골재채취장의 관리가 불가능 함</li> </ul>	검토대상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도시경제과	○공장등록변경사항 신고를 하여야 함	저촉없음
건축법	"	○건축물 착공신고서 제출 후 사업시행하여야 함.	"
수질환경보전법	환경복지과	○사업시행전 폐수 토사유출 등 세부 방지계획을 수립 하여 협의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	"	○사업시행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필하여야 하며 신고시 주변 방진방 설치, 방진덮개, 세풍시설등 적절한 방지계획을 첨부하여야 함.	"
소음.진동규제법	"	○파쇄기등 10HP이상이면 소음.진동배출시설 신고를 필할 것.	"
농지법	농업경영과	○농지전용허가 대상이며 저촉사항 없음	"
농지관리위원회	평창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초 신청시 지역주민 의견을 무시한 신청으로 지역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강력히 표출하였으나</li> <li>○지역주민들을 상대로한 사업설명회등을 통하여 제반 준수사항을 철저하게 이행시 상호 협조를 합의하는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의견제시</li> </ul>	"



□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위원

구 분	직 위	성 명	비 고
위원장	부군수	신대송	
위 원	기획실장	권순철	감사분야
"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민원분야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인력분야
"	재무과장	김일래	세정분야
"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환경분야
"	건설과장	박현창	골재분야
"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공장분야
"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농지분야

"새세기 신사고 활기찬 평창"

평 창 군

우 232-807 / 강원도 평창 평창 하리 210-2 / TEL(0374)330-2497 / FAX330-2595  
 건설과(본청 1층) 과장 : 박현창 지방토목주사 : 장근용 담당자 : 여정은

문서번호 건설 58172 - 2935

시행일자 2002. 9. 30.

공개여부 ( )

(제 1 안)

발음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011-1

임광아파트 12-1008호

강 상 옥

보존기간		군 수	
공개여부	공 개	Juplo	
부군수	전 결		
과 장	박현창		
기 안 자	장근용	담당	Juplo
심 사 자	박근용	심사일	2002. 9. 30

제목 하천 공작물 설치 및 일시점용 기간연장 허가

1. 평소 지역발전에 적극 협조하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진부면 간평리 597-4번지의 7필지(597-6번지선)의 하천 공작물 설치 및 일시점용 기간연장 신청에 대하여 하천법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건을 부여하여 허가하니 기간내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하시고
3. 당초 허가시 차집관로 시공시에는 관계공무원의 사전 검측을 받고 시공완료후 관로내부의 수밀검사 및 CC-TV자료를 제출토록 한 바,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4. 허가증은 진부면사무소에 송부하였으니 면허세 및 점용료 납부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하천 일시 점용 기간연장 및 영구점용기허가 사항

소재지	지 번	점용면적(m <sup>2</sup> )		점용목적	허가기간	피 허 가 자	
		일시점용	영구점용			주 소	성 명
진부면 간평리	597-4	1290	430	공작물설치 (근린생활시설 오수관 매설)	2000. 8. 26 ~ 2004. 12. 31.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011-1 임광아파트 12-1008호	강상옥
"	597-39	276	92				
진부면 호명리	1068-3	1152	384		(일시점용기간 : 당초-		
"	849	849	283		2000. 8. 26 ~		
"	860-1	189	63		2002. 9. 29.		
"	865	219	73		변경-		
"	864-1	189	63		2000. 8. 26 ~		
"	888	558	186		2003. 4. 30.)		
계	8필지	4,722	1,574				

◆ 공작물 설치 허가 사항

소재지	지 번	공작물명	점용목적	허가기간		피 허가 자	
				당초	변경	주 소	성 명
진부면 간평리	597-4	이중벽PE관 (Ø450mm) L=1,623m, 홍관(Ø450mm) L= 50m, 맨홀(1.5×1.5 ×2.45)34개소, 기존보개기 및 복구1식	근린생활시설 오수관 매설공사	2000. 8. 26	2000. 8. 26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011-1 임광아파트 12-1008호	강상욱
"	597-39			~	~		
진부면 호명리	1068-3			2002. 9. 29.	2003. 4. 30.		
"	849						
"	860-1						
"	865						
"	864-1						
"	888						

끝.

(제 2 안)

수신 진부면장

제목 하천 공작물 설치 및 일시점용 기간연장 허가 통보

1. 진부면 간평리 597-4번지의 7필지(597-6번지선)의 하천 공작물 설치 및 일시점용 기간연장 신청에 대하여 하천법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하였음을 통보하니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2. 허가증은 면허세 및 점용료 징수후 교부하고, 공고문은 게시후 그 결과물 제출하기 바랍니다.

◆ 하천 일시 점용 기간연장 및 영구점용기허가 사항

"제 1안과 같음"

◆ 공작물 설치 허가 사항

"제 1안과 같음"

붙임 : 1. 허가증 2부

2. 공고문 1부 끝.

평 창 군 수

# 토지(하천)점용허가증

건설 제 2002 - 7 - 150호

주 소 :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1-1 임광APT 12동 1008호

성 명 : 감 상 옥

주민등록번호 :

## 허가내용

1. 하 천 명 : 지방2급 (월정천, 오대천)
2. 소 재 지 :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597-4, 597-39번지(597-6번지선)  
“ 호명리1068-3,849,860-1,865,864-1,888번지
3. 점용면적 : 일시점용 4,722㎡, 영구점용 1,574㎡,
4. 점용목적 : 공작물설치(근린생활시설 오수관매설)
5. 허가기간 : 2000. 8. 26 ~ 2004. 12. 31.

(일시점용기간 : 당초 - 2000. 8. 26 ~ 2002. 9. 29

변경 - 2000. 8. 26 ~ 2003. 4. 30)

귀하가 2002. 9. 26일자 출원한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597-4번지의 7필지의 하천점용 허가신청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건을 부하여 허가합니다.

2002 년 9 월 30일

평 창 군



※ 조건사항은 이면참조

## ( 조        건 )

1. 점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매년 군수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된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점용료를 납부한후가 아니면 허가에 의한 행위를 실행치 못한다.
3. 점용료를 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4. 허가권의 정당한 절차없이 양도·양수 또는 상속하여서는 아니된다.
5. 점용목적의 사용은 금한다 (목적외 사용시 허가취소)
6. 점용부지내 정당한 절차없이 구조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7. 지형 또는 형질 기존시설(건축)물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8. 점용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여서는 아니된다.
9. 점용부지내 다년생 식물을 재식하는 행위는 일절 금한다.
10. 점용기간 만료후 계속점용할 경우에는 늦어도 점용기간 만료 15일전 까지 갱신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1.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기타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2. 하천감시원 명령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복하여서는 아니된다.
13. 관리청은 피허가자가 본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상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의 변경 또는 취소등을 처분할 수 있다.
14. 진출입도로 이용시 타인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5. 대체구거 부지에 대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허가취소될 경우 피허가자는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
16. 관리청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취소·변경등의 처분이 있을 때 또는 재해로 인한 손실이 있을 때에는 피허가자는 손실보상 및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
17. 주차장부지 진출입도로 및 가설건축물은 허가종료와 함께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8. 본 점용부지에 대하여 향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할 경우에는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 조 건 )

1. 점용목적의 사용은 일체 금한다.
2. 지형 또는 형질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3. 허가사항을 명시한 표지판을 허가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하천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필요한 감독 또는 본 허가조건에 따라 발하는 명령으로 인하여 피허가자가 손해를 받을지라도 피허가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동법령 및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받을시에는 이에 대한 배상은 피허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5. 본 공사로 인하여 각종시설물 및 인근 농경지에 피해가 발생되었을 시에는 피허가자는 자력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허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6. 허가청은 공익상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의 변경, 취소등의 처분을 언제라도 할 수 있다.
7. 차집관로 시공시에는 관계공무원의 사전 검측을 받고 시공완료후 관로 내부의 수밀검사 및 CC-TV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8. 흙물 및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물막이등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9. 타법령에 의거 허가 및 신고를 득하여야 할 경우 허가 및 신고를 득한후 사업시행을 하여야 한다.
10. 교량 및 도로에 대하여는 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11. 원상회복비용(공사비의 100분의10)을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 또는 평창군수물 수취인으로 하여 인허가보증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증권으로 납부시 허가기간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하며 원상회복비용 납부 후 착공하여야 한다.
12. 대홍수등 특이사항이 발생하여 구조물에 의한 문제(제해등)가 예상될 때는 구조물의 철거등 관리청의 지시에 따른다.
13. 상기 각호에 의거 허가 취소 또는 변경의 처분이 있을시에는 손실보상 및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
14.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개시 3일전까지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15. 소음, 진동규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소음, 진동규제법에 정한 특정 장비(굴삭기등)을 2일이상사용하고, 사업장 경계 300m이내에 주택등이 있을 경우 사업개시 3일전까지 특정공사사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 하천 공작물설치 허가증

건설 제 2002 - 7 - ㄹ 호

주 소 :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1-1 임광APT 12동 1008호

성 명 : 강 상 욱

주민등록번호 : (3473-1430)

## 허가내용

1. 하 천 명 : 월정천, 오대천
2. 소 재 지 :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597-4, 597-39번지(597-6번지선)  
\* 호명리1068-3,849,860-1,865,864-1,888번지
3. 공작물 설치구조 : 이중벽P.E관(Φ450mm) L=1,623m,  
흙관(Φ450mm) L=50m,  
맨홀(1.5\*1.5\*2.45) 34개소,  
기존보케기 및 복구1식
4. 설치목적 : 근린생활시설 오수관로 매설공사
5. 허가(공사)기간 : 당초 - 2000. 8. 26 ~ 2002. 9. 29.  
변경 - 2000. 8. 26 ~ 2003. 4. 30.

귀하가 2002. 9. 26일자 출원한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597-4번지외7필지의 공작물설치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하천법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건을 부하여 허가합니다.

2002 년 9 월 30일

평 창 군



\* 조건사항은 이면참조

공고 제2002-34호

##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기간연장허가공고

하천법 제33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기간연장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2년 9월 30일

평 창 군



점 용 자	주 소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1-1 임광아파트12-1008호	
	성 명	강 상 욱	
하 천 명		월정천, 오대천	
점 용 사 용 개 요	위 치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597-4번지외7필지	
	면 적	6,296㎡ (영구점용 1,574㎡, 일시점용4,722㎡)	
	기 간	당초	일시점용및공작물설치기간 2000. 8. 26 ~ 2002. 9. 29.
	변경	일시점용및공작물설치기간 2000. 8. 26 ~ 2003. 4. 30.	
목적 및 사유	공작물 설치 {이중벽P.E관(φ 450mm) L=1623m, 홍관(φ 450mm) L=50m, 맨홀(1.5× 1.5× 2.45)34개소, 기존보개기및복구1식}		



## 점용료 산출근거

### 1. 허가사항

◆ 하천 일시 점용 기간연장 및 영구점용기허가 사항

소재지	지 번	점용면적(m <sup>2</sup> )		점용목적	허가기간	피 허가자	
		일시점용	영구점용			주소	성명
진부면 간평리	597-4	1290	430	공작물설치 (근린생활시설 오수관 매설)	2000. 8. 26 ~ 2004. 12. 31.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011-1 임광아파트 12-1008호	강상욱
"	597-39	276	92		(일시점용기간 : 당초-		
진부면 호명리	1068-3	1152	384		2000. 8. 26 ~		
"	849	849	283		2002. 9. 29		
"	860-1	189	63		변경-		
"	865	219	73		2000. 8. 26 ~		
"	864-1	189	63		2003. 4. 30.)		
"	888	558	186				
계	8필지	4,722	1,574				

2. 산정기준 : 면적(m<sup>2</sup>) × 공시지가 × 요율(3.0%)

3. 산정기간 : 2002. 9. ~ 2002. 4. 30.

4. 점 용 료 : 공시지가 - 7,520원(인근지번 597-6)

일시점용 - 4,722m<sup>2</sup> \* 7,520원 \* 0.03 \* 8/12 = 710,180원

합 계                      710,180원

평정자 : 건설과 지방행정7급 여정은 (인)

현원서류

처리기간 2002. 10. 1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

처리기간

5 일

신청인	성명 (법인의명칭)	장 상 숙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대표자의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01-1 일왕아파트 12-1008호	전화번호	2473-1430 011-227-9651
허가연월일및번호		년 월 일(제 2002-74호)		
점용(행위)위치		경남권 조두면 간곡리 597-4, 597-29(597-6번지) 1068-45전 비지		
점용(행위)내역		양곡(농사) (제21조제3항)	점용(행위)면적	4,700 m <sup>2</sup> 1,574
점용(행위)기간		2002년 8월 29일부터 2002년 9월 29일까지 (간)		
연장기간		2002년 9월 29일부터 2003년 4월 30일까지 (간)		
연장사유		농사지용용		

하천법 제33조제1항(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3항(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선결	과장	김영성	결재(공백)	담당	2002년 9월 17일
접수일시	시	번호	923	신청인	장 상 숙
처리과	건설과				

평 장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 음

"새세기 신사고 활기찬 평창"  
평 창 군

우 232-807 / 강원도 평창 평창 하리 210-2 / TEL(033)330-2497 / FAX330-2595  
건설과(본청 1층) 과장 : 박현창 지방토목주사 : 장근용 담당자 : 여정은

문서번호 건설 58172 - 2291  
시행일자 2002. 9. 16.

공개여부 ( )  
(제 1 안)  
발음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1-1  
임광APT 12-1008  
강 상 목

보존기간		군 수	
공개여부	공 개	2002. 9. 16	
부군수			
과 장	전 결		
기 안 자	(인)	담당	협조
심 사 자		심사일	

제목 하천점용 및 공작물설치 권리 - 의무 승계신고 수리

면허서부과장

1. 평소 지역발전에 적극 협조하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진부면 간평리 597-4번지의 7필지(597-6번지선)의 하천점용 권리 - 의무 승계신고에 대하여 하천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통보하니 허가조건 이행 및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허가증은 진부면사무소에 송부하였으니 면허세 납부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하천점용 허가 사항

소재지	지 번	점용면적(㎡)		점용목적	허가기간	피 허 가 자	
		일시점용	영구점용			당 초	변 경
진부면 간평리	597-4	1290	430	공작물설치 (근린생활시설 오수관 매설)	2000. 8. 26 ~ 2004. 12. 31. (일시점용기간 : 2000. 8. 26 ~ 2002. 9. 29.))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대관령빌라3-201 김 만 경	서초구 방배동 1011-1 임광@ 12-1008 강 상 목
"	597-39	276	92				
진부면 호명리	1068-3	1152	384				
"	849	849	283				
"	860-1	189	63				
"	865	219	73				
"	864-1	189	63				
"	888	558	186				
계	8필지	4,722	1,574				

◆ 공작물 설치 허가 사항

소재지	지 번	공작물명	점용목적	허가기간	피 허 가 자	
					당 초	변 경
진부면 간평리	597-4	이중벽PE관 (Ø450mm) L=1,623m	근린생활시설 오수관 매설 공사	2000. 8. 26 ~ 2002. 9. 29.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대관령빌라3-201 김 만 결	서초구 방배동 1011-1 임광@ 12-1008 강 상 욱
"	597-39					
진부면 호명리	1068-3	흡관(Ø450mm) L= 50m				
"	849					
"	860-1	맨홀(1.5×1.5 ×2.45)34개소				
"	865					
"	864-1	기존보개기 및 복구1식				
"	888					

참.

(제 2 안)

수신 진부면장

제목 하천점용 및 공작물설치 권리·의무 승계신고 수리통보

1. 진부면 간평리 597-4번지의 7필지(597-6번지선)번지의 하천점용 및 공작물 설치 권리·의무승계신고에 대하여 하천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수리하였기 통보하니 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허가증은 면허세 징수후 교부하기 바랍니다.

◆ 하천점용 허가 사항

" 제 1 안과 같음 "

◆ 공작물 설치 허가 사항

" 제 1 안과 같음 "

붙 임 : 허가증 2부 끝.

평 창 군 수

# 토지(하천)점용허가증

건설 제 2002 - 7 - 152호

주 소 :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1-1 임광APT 12동 1008호

성 명 : 강 상 옥

주민등록번호 : (3473-1430)

## 허가내용

1. 하 천 명 : 지방2급 (월정천, 오대천)
2. 소 재 지 :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597-4, 597-39번지(597-6번지선)  
\* 호명리1068-3,849,860-1,865,864-1,888번지
3. 점용면적 : 일시점용 4,722㎡, 영구점용 1,574㎡,
4. 점용목적 : 공작물설치(근린생활시설 오수관매설)
5. 허가기간 : 2000. 8. 26 ~ 2004. 12. 31.

(일시점용기간 : 2000. 8. 26~2002. 9. 29)

귀하가 2002. 9. 일자 출원한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597-4번지의 7필지의 하천점용 허가신청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건을 부하여 허가합니다.

2002 년 9 월 16 일

평 창 군



※ 조건사항은 이면참조

## ( 조        건 )

1. 점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매년 군수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된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점용료를 납부한후가 아니면 허가에 의한 행위를 실행치 못한다.
3. 점용료를 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4. 허가권의 정당한 절차없이 양도·양수 또는 상속하여서는 아니된다.
5. 점용목적의 사용은 금한다 (목적외 사용시 허가취소)
6. 점용부지내 정당한 절차없이 구조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7. 지형 또는 형질 기존시설(건축)물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8. 점용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여서는 아니된다.
9. 점용부지내 다년생 식물을 재식하는 행위는 일절 금한다.
10. 점용기간 만료후 계속점용할 경우에는 늦어도 점용기간 만료 15일전 까지 갱신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1.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기타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2. 하천감시원 명령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복하여서는 아니된다.
13. 관리청은 피허가자가 본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상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의 변경 또는 취소등을 처분할 수 있다.
14. 진출입도로 이용시 타인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5. 대체구거 부지에 대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허가취소될 경우 피허가자는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
16. 관리청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취소·변경등의 처분이 있을 때 또는 재해로 인한 손실이 있을 때에는 피허가자는 손실보상 및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
17. 주차장부지 진출입도로 및 가설건축물은 허가종료와 함께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8. 본 점용부지에 대하여 향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할 경우에는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하천 공작물설치 허가증

건설 제 2002 - 7 - 4호

주 소 :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1-1 임광APT 12동 1008호

성 명 : 강 상 욱

주민등록번호 : (3473-1430)

## 허가내용

1. 하 천 명 : 월정천, 오대천
2. 소 재 지 :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597-4, 597-39번지(597-6번지선)  
\* 호명리1068-3,849,860-1,865,864-1,888번지
3. 공작물 설치구조 : 이중벽P.E관(Φ450mm) L=1,623m,  
\* 흙관(Φ450mm) L=50m,  
\* 맨홀(1.5\*1.5\*2.45) 34개소,  
\* 기존보개기 및 복구1식
4. 설치목적 : 근린생활시설 오수관로 배설공사
5. 허가(공사)기간 : 2000. 8. 26 ~ 2002. 9. 29.

귀하가 2002. 9. 일자 출원한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597-4번지의7필지의 공작물설치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하천법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건을 부하여 허가합니다.

2002년 9월 16일

평 창 군



※ 조건사항은 이면참조

## ( 조        건 )

1. 점용목적외 사용은 일체 금한다.
2. 지형 또는 형질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3. 허가사항을 명시한 표지판을 허가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하천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필요한 감독 또는 본 허가조건에 따라 발하는 명령으로 인하여 피허가자가 손해를 받을지라도 피허가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동법령 및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받을시에는 이에 대한 배상은 피허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5. 본 공사로 인하여 각종시설물 및 인근 농경지에 피해가 발생되었을 시에는 피허가자는 자력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허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6. 허가청은 공익상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의 변경, 취소등의 처분을 언제라도 할 수 있다.
7. 차집관로 시공시에는 관계공무원의 사전 검측을 받고 시공완료후 관로 내부의 수밀검사 및 CC-TV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8. 흙물 및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물막이등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9. 타법령에 의거 허가 및 신고를 득하여야 할 경우 허가 및 신고를 득한후 사업시행을 하여야 한다.
10. 교량 및 도로에 대하여는 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11. 원상회복비용(공사비의 100분의10)을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 또는 평창군수를 수취인으로 하여 인허가보증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증권으로 납부시 허가기간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하며 원상회복비용 납부 후 착공하여야 한다.
12. 대홍수등 특이사항이 발생하여 구조물에 의한 문제(재해등)가 예상될 때는 구조물의 철거등 관리청의 지시에 따른다.
13. 상기 각호에 의거 허가 취소 또는 변경의 처분이 있을시에는 손실보상 및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
14.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개시 3일전까지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15. 소음, 진동규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소음, 진동규제법에 정한 특정장비(굴삭기등)을 2일이상사용하고, 사업장 경계 300m이내에 주택등이 있을 경우 사업개시 3일전까지 특정공사사전신고를 하여야한다.



# 민원서류

처리기한 2022. 9. 16

권리·의무승계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승계인 (상속·양수인 ·합명법인)	성명 (법인의명칭)	강상욱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 1동 111-1 (2) 2473-1470 아파트 1023호 아27-1651		
피승계인 (피상속인·양도인 ·합명법인)	성명 (법인의명칭)	김반건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하남시 개천로 1068-3외 7번지 (2-201)		
하천의 명칭 및 위치	오래리. 경남도 김해시 간성리. 호우리 1068-3외 7번지			
권리의무의 내용	전속물 부대권 취득이유서와 공탁증 등			
승계(상속·양도 ·합명) 사유				
<p>하천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2년 9월 일</p>				
신청	과장	결재(승인)	담당	
접수일시	2022. 9. 14	민원번호	승계인	강상욱
처리과	건설과		피승계인	김반건
평 장 군 수 귀하				
<p>구비서류 - 승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 수수료 : 없음</p>

# 점 용 포 기 서

성 명 : 김 만 경

주 소 : 평안군 진부면 하진부리 대관령입차 3-2이

주민등록번호 :

허가내용

0 허가번호 : 2022-7-9

0 허가위치 : 평안군 진부면 간평리, 호평리 1068-3외 7필지

0 허가면적 : ㎡

0 허가목적 : 건축용 위한 소규모주택용지

상기 본인은 상기 허가사항에 대한 점용허가권을 포기합니다.

2022. 9.


포기인 : 김 만 경



붙임 : 인감증명 1통.

[제1호 서식]

(제1면)


주민등록 번호	인감증명서		본 인	대 리
성 명 (한 자)	( 김 순 만 )		인	
주소이동사항	순서	주소 (동/반)	전입	전출
	1	강원도평창군전부면... 5/1	81. 1. 4	93. 2. 13
	2	강원도평창군전부면... 2/2	83. 2. 14	84. 4. 8
	3	강원도평창군전부면... 4/4	84. 4. 9	
	4	강원도평창군전부면... 7/6	84. 9. 24	
	5	강원도평창군전부면... 5/1	95. 10. 25	
	6			
	7	강원도평창군전부면... 5/6	96. 5. 29	
	8			
	9			
10				

부대 동수 산자	성명(법한명)	주소	빈 란
----------------	---------	----	-----

- 부동산 매수자란에는 부동산 매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름 기재하고, 부동산 용도 이외의 경우에는 "빈란"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그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 필요한 경우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미기재시 불이익을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용도 24관 민허가 양수 양도 인감은 신고인감과 불일치함을 증명합니다.

강원도평창군전부면장  
인감이 인영과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허가 번호	허가명	허 가 현 황				피 허 가 자			비고
		위 치	지번	허가면적 (㎡)	허가목적	허가기간	주 소	성 명	
7-125	오대천	간평리	725-54 (25-539)	1532	전	2000. 5. 29 ~2004. 4. 21	간평리 125-1/3	이상훈	82- 6554
7-126	척척	척척리	503-7 (8449)	638	대지	2000. 6. 20 ~2004. 12. 31	수원시 권선구 척척동 661-10	김영자	
7-127	오대천	송림리	2390-7 (2077-10)	1390	빈집	2000. 4. ~2001. 2. 28	하진부리 207	지영봉	72-840
7-128	월림천 오대천	간평리	577-648 (877-60)	1576	근린생활시설	2000. 8. 21 ~2004. 12. 31	하진부리 대문길 20-2	김인영	331- 124
7-129	오대천	하진부리	1289 (총합 1745-58)	23,565 (8444-108)	수상시설	2000. 7. 20 ~2003. 9. 20	3서로 상남 하진부리 336-1	김영자	81-708 1769- 201-0 72-840
	"	송림리	2390-1	수상시설	"	"	하진부리 336-1	김영자	
7-130	오대천	수항리	87-1 (834)	851	전	2000. 10. 8 ~2004. 12. 31	수항리 106	김종학	333- 3333
7-131	"	"	87-1 (834)	6,186	"	"	"	"	"
7-132	"	"	87-1 (8449)	3,897	"	2000. 1. 1 ~2004. 12. 31	수항리 376 간평리 793	이석호	333- 7141
7-133	"	"	75-1 (2728)	1,875	"	"	"	"	"
7-134	"	하진부리	1289 (343-20)	8,158	거주지역 수상시설	2000. 10. 16 ~2002. 4. 16	간동시 북동동 370-10	김영자	642- 4646
7-135	"	수항리	87-1 (400-1 6795)	890	수상시설	2000. 1. 1 ~2004. 12. 31	상동지 포동동 1827-2	송종익	652- 7235
7-136	"	신기리	212-7 (212-3)	859	전	2001. 8. 2 ~2004. 12. 31	신기리 200	송영자	335- 3054
7-137	척척	하진부리	102-7 (102-10)	1905	전	2001. 3. 29 ~2004. 12. 31	하진부리 하진부리 31-13 57,	신정숙	336- 7000
7-138	오대천	간평리	665 (525-18)	197	카센터 관리부지	2001. 3. 29 ~2004. 12. 31	하진부리 간평리 525-6	김희환	333- 4909
7-139	"	하진부리	1289-26 (1289-27)	126	대지	2001. 5. 10 ~2004. 12. 31	하진부리 25-1 1/2	김수기	011-1778 7-13- 0666
7-140	"	신기리 거룡리	235 (897)	2,907	전	2000. 1. 1 ~2004. 12. 31	신기리 126	김영자	325- 5613
7-141	척척	상진부리	5027 (5027-100-1)	1,901	전	2001. 4. 6 ~2004. 12. 31	하진부리 47 대문길 30-5	김정래	335- 4271
7-142	"	척척리	503-9 (604)	155	전	2001. 5. 17 ~2004. 12. 31	하진부리 1번	이종환	325- 4245
7-143	오대천	간평리	725-18	3,878	전	2001. 11. 26 ~2004. 12. 31	수항리 293-6	임세희	331- 4602
7-144	척척	상진부리	1027 (1027-282)	5,378	전	2001. 3. 26 ~2004. 12. 31	상진부리 316-2	최종복	325- 3063

(100번지선)

(100번지선)

# 하천공작물 설치허가 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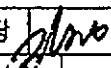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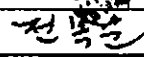
허가번호	위 치	지 번	설치면적 (설치구조)	피 허 가 차		허가일자 (허가기간)	설치목적	비고
				주 수	성 명			
2000-5-9	보평면 추사리 2444-7 2446, 2447, 2448		부속 (가) 1.5m-2.0m 2-1.90m	하천시 강변단원 관양터 상위 단 233	서 명 석	2000.5.9 ~2000.12.31	상부단 및 추사리단 매립지 보호	
2000-5-10	보평면 추사리	산 446	평도 = 1717.3 m <sup>2</sup>	"	"	"	수해방지용 취화 하천정제기	
2000-6-11	보평면 추사리 정촌동 관동리 " 도동리	367 산 14-1	용관매원(L=25m, 폭=10, 20mm) 20X(0.5) 관상(가) 1.5, B=2.0 상부 단원기 상부단 24 부속(가) 1.5, B=2.0 하부 단원기 하부단 24	바리 68-1 부속(가) 1.5, B=2.0 하부 단원기 하부단 24	(가) 관동정제기 상부단 유지선	2000.6.11 ~2001.1.31	추사리정제기 관상	
2000-6-12	보평면 추사리	472-6 473-11	부속(가) 1.5, B=2.0 하부 단원기 하부단 24	부속(가) 1.5, B=2.0 하부 단원기 하부단 24	유지선	2000.6.12 ~2001.1.31	추사리정제기	
2000-6-13	보평면 추사리	1463	부속(가) 1.5, B=2.0 하부 단원기 하부단 24	부속(가) 1.5, B=2.0 하부 단원기 하부단 24	유지선	2000.6.13 ~2001.1.31	추사리정제기	
2000-6-14	보평면 추사리	25-6 25-26	관상(가) 1.5, B=2.0 하부 단원기 하부단 24	관상(가) 1.5, B=2.0 하부 단원기 하부단 24	유지선	2000.6.14 ~2001.1.31	추사리정제기	
2000-6-15	보평면 추사리 " 도동리	1052, 1002-1 134-19	관상(가) 1.5, B=2.0 하부 단원기 하부단 24	관상(가) 1.5, B=2.0 하부 단원기 하부단 24	유지선	2000.6.15 ~2001.1.31	추사리정제기	
2000-7-16	진부면 송림리	2390-1 477	관상(가) 1.5, B=2.0 하부 단원기 하부단 24	관상(가) 1.5, B=2.0 하부 단원기 하부단 24	유지선	2000.7.16 ~2001.1.31	추사리정제기	
2000-6-17	대회면 신리	1702	관상(가) 1.5, B=2.0 하부 단원기 하부단 24	관상(가) 1.5, B=2.0 하부 단원기 하부단 24	유지선	2000.6.17 ~2001.1.31	추사리정제기	
2000-6-18	보평면 회계리	661	관상(가) 1.5, B=2.0 하부 단원기 하부단 24	관상(가) 1.5, B=2.0 하부 단원기 하부단 24	유지선	2000.6.18 ~2001.1.31	추사리정제기	
2000-7-19	진부면 관동리 " 보림리	474-1, 577-1 489, 487, 486, 485, 484, 483, 482, 481, 480, 479, 478, 477, 476, 475, 474, 473, 472, 471, 470, 469, 468, 467, 466, 465, 464, 463, 462, 461, 460, 459, 458, 457, 456, 455, 454, 453, 452, 451, 450, 449, 448, 447, 446, 445, 444, 443, 442, 441, 440, 439, 438, 437, 436, 435, 434, 433, 432, 431, 430, 429, 428, 427, 426, 425, 424, 423, 422, 421, 420, 419, 418, 417, 416, 415, 414, 413, 412, 411, 410, 409, 408, 407, 406, 405, 404, 403, 402, 401, 400, 399, 398, 397, 396, 395, 394, 393, 392, 391, 390, 389, 388, 387, 386, 385, 384, 383, 382, 381, 380, 379, 378, 377, 376, 375, 374, 373, 372, 371, 370, 369, 368, 367, 366, 365, 364, 363, 362, 361, 360, 359, 358, 357, 356, 355, 354, 353, 352, 351, 350, 349, 348, 347, 346, 345, 344, 343, 342, 341, 340, 339, 338, 337, 336, 335, 334, 333, 332, 331, 330, 329, 328, 327, 326, 325, 324, 323, 322, 321, 320, 319, 318, 317, 316, 315, 314, 313, 312, 311, 310, 309, 308, 307, 306, 305, 304, 303, 302, 301, 300, 299, 298, 297, 296, 295, 294, 293, 292, 291, 290, 289, 288, 287, 286, 285, 284, 283, 282, 281, 280, 279, 278, 277, 276, 275, 274, 273, 272, 271, 270, 269, 268, 267, 266, 265, 264, 263, 262, 261, 260, 259, 258, 257, 256, 255, 254, 253, 252, 251, 250, 249, 248, 247, 246, 245, 244, 243, 242, 241, 240, 239, 238, 237, 236, 235, 234, 233, 232, 231, 230, 229, 228, 227, 226, 225, 224, 223, 222, 221, 220, 219, 218, 217, 216, 215, 214, 213, 212, 211, 210, 209, 208, 207, 206, 205, 204, 203, 202, 201, 200, 199, 198, 197, 196, 195, 194, 193, 192, 191, 190, 189, 188, 187, 186, 185, 184, 183, 182, 181, 180, 179, 178, 177, 176, 175, 174, 173, 172, 171, 170, 169, 168, 167, 166, 165, 164, 163, 162, 161, 160, 159, 158, 157, 156, 155, 154, 153, 152, 151, 150, 149, 148, 147, 146, 145, 144, 143, 142, 141, 140, 139, 138, 137, 136, 135, 134, 133, 132, 131, 130, 129, 128, 127, 126, 125, 124, 123, 122, 121, 120, 119, 118, 117, 116, 115, 114, 113, 112, 111, 110, 109, 108, 107, 106, 105, 104, 103, 102, 101, 100, 99, 98, 97, 96, 95, 94, 93, 92, 91, 90, 89, 88, 87, 86, 85, 84, 83, 82, 81, 80, 79, 78, 77, 76, 75, 74, 73, 72, 71, 70, 69, 68, 67, 66, 65, 64, 63, 62, 61, 60, 59, 58, 57, 56, 55, 54, 53, 52, 51, 50, 49, 48, 47, 46, 45, 44, 43, 42, 41, 40, 39, 38, 37, 36, 35, 34, 33, 32, 31, 30, 29, 28, 27, 26, 25, 24, 23, 22, 21,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관상(가) 1.5, B=2.0 하부 단원기 하부단 24	관상(가) 1.5, B=2.0 하부 단원기 하부단 24	유지선	2000.7.19 ~2001.1.31	추사리정제기	

"새세기 신사고 활기찬 평창"  
**평 창 군**

우 232-807 / 강원도 평창 평창 하리 210-2 / TEL(0374)330-2497 / FAX330-2595  
 건설과(본청 1층) 과장 : 박현창 지방토목주사 : 장근용 담당자 : 여정은

문서번호 건설 58172 - 1817  
 시행일자 2002. 6. 12.

공개여부 ( )  
 (제 1 안)  
 발용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대관령빌라 3-201호  
 김 만 겸

보존기간		군 수		
공개여부	공 개			
부군수	전 결			
과 장	박현창			
기 안 자		담당		협조
심 사 자		심사일	2002.6.12	

**제목 하천 공작물 설치 및 일시점용 기간연장 허가**

1. 평소 지역발전에 적극 협조하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진부면 간평리 597-4번지의 7필지(597-6번지선)의 하천 공작물 설치 및 일시점용 기간연장 신청에 대하여 하천법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건을 부하여 허가하니 기간내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하시고
3. 당초 허가시 차집관로 시공시에는 관계공무원의 사전 검측을 받고 시공완료후 관로내부의 수밀검사 및 CC-TV자료를 제출토록 한 바,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4. 허가증은 진부면사무소에 송부하였으니 면허세 및 점용료 납부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하천 일시 점용 기간연장 및 영구점용기허가 사항

소재지	지 번	점용면적(m <sup>2</sup> )		점용목적	허가기간	피 허 가 자	
		일시점용	영구점용			주 소	성 명
진부면 간평리	597-4	1290	430	공작물설치 (근린생활시설 오수관 매설)	2000. 8. 26 ~ 2004. 12. 31.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대관령빌라3-201	김만겸
"	597-39	276	92				
진부면 호명리	1068-3	1152	384		(일시점용기간 : 당초-		
"	849	849	283		2000. 8. 26 ~		
"	860-1	189	63		2001. 11. 30.		
"	865	219	73		변경-		
"	864-1	189	63		2000. 8. 26 ~		
"	888	558	186		2002. 9. 29.))		
계	8필지	4,722	1,574				

◆ 공작물 설치 허가 사항

소재지	지 번	공작물명	점용목적	허가기간		피 허가 자	
				당초	변경	주 소	성 명
진부면 간평리	597-4	이중벽PE관 (Ø450mm) L=1,623m, 홍관(Ø450mm) L= 50m, 맨홀(15×15 ×2.45)34개소, 기존보계기 및 복구1식	근린생활시설 오수관 매설공사	2000. 8. 26 ~ 2001. 11. 30.	2000. 8. 26 ~ 2002. 9. 29.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대관령빌라3-201	김만겸
"	597-39						
진부면 호명리	1068-3						
"	849						
"	860-1						
"	865						
"	864-1						
"	888						

끝.

(제 2 안)

수신 진부면장

제목 하천 공작물 설치 및 일시점용 기간연장 허가 통보

1. 진부면 간평리 597-4번지의 7필지(597-6번지선)의 하천 공작물 설치 및 일시점용 기간연장 신청에 대하여 하천법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하였음을 통보하니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2. 허가증은 면허세 및 점용료 징수후 교부하고, 공고문은 게시후 그 결과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하천 일시 점용 기간연장 및 영구점용기허가 사항

“제 1안과 같음”

◆ 공작물 설치 허가 사항

“제 1안과 같음”

붙임 : 1. 허가증 2부

2. 공고문 1부 끝.

평 창 군 수

# 토지(하천)점용허가증

건설 제 2002 - 7 - 128 호

주 소 :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대관령빌라 3-201호

성 명 : 김 만 겹

주민등록번호 : (336-1228)

## 허가내용

1. 하 천 명 : 지방2급 (월정천, 오대천)
2. 소 재 지 :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597-4, 597-39번지(597-6번지선)  
“ 호명리1068-3,849,860-1,865,864-1,888번지
3. 점용면적 : 일시점용 4,722㎡, 영구점용 1,574㎡,
4. 점용목적 : 공작물설치(근린생활시설 오수관매설)
5. 허가기간 : 2000. 8. 26 ~ 2004. 12. 31.

(일시점용기간 : 당초 - 2000. 8. 26~2001. 11. 30)

변경 - 2000. 8. 26~2002. 9. 29)

귀하가 2002. 6. 7일자 출원한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597-4번지의 7필지의 하천점용 허가 기간연장신청에 대하여 하천법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건을 부하여 허가합니다.

2002 년 6 월 일

평 창 군



※ 조건사항은 이면참조



# 하천 공작물설치 허가증

건설 제 2002 - 7 - 16 호

주 소 :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대관령빌라 3-201호

성 명 : 김 만 겸

주민등록번호 : (336-1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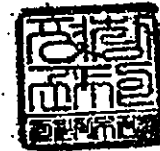
## 허가내용

1. 하 천 명 : 월정천, 오대천
2. 소 재 지 :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597-4, 597-39번지(597-6번지선)  
\* 호명리1068-3,849,860-1,865,864-1,888번지
3. 공작물 설치구조 : 이중벽P.E관(Φ450mm) L=1,623m,  
흙관(Φ450mm) L=50m,  
맨홀(1.5\*1.5\*2.45) 34개소,  
기존보개기 및 복구1식
4. 설치목적 : 근린생활시설 오수관로 매설공사
5. 허가(공사)기간 : 당초 - 2000. 8. 26 ~ 2001. 11. 30.  
변경 - 2000. 8. 26 ~ 2002. 9. 29.

귀하가 2002. 6. 7일자 출원한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597-4번지의외7필지의 공작물설치허가 기간연장신청건에 대하여 하천법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건을 부하여 허가합니다.

2002 년 6 월 일

평 창 군



※ 조건사항은 이면참조

공고 제2002 - 195호

### 하천점용 기간연장허가공고

하천법 제33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 기간연장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2년 6 월 12일

## 평 창 군



점 용 자	주 소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대관령빌라 3-201		
	성 명	김 만 경		
하 천 명		월정천, 오대천		
점 용 사 용 개 요	위 치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597-4번지외 7필지 (간평리597-39, 호명리1068-3· 849· 860-1· 865· 864-1· 888)		
	면 적	일시점용 4,722㎡ (※영구점용 1,574㎡)		
	기 간	당초	2000년 8월26일 ~ 2001년 11월30일	
		변경	2000년 8월26일 ~ 2002년 9월29일	
목적 및 사유	근린생활시설 오수관매설 {이중벽P.E관(Ø 450mm) L=1,623m, 홍관(Ø 450mm) L= 50m, 맨홀(1.5× 1.5× 2.45)34개소, 기존보개기 및 복구1식}			

## 점용료 산출근거

### 1. 허가사항

◆ 하천 일시 점용 기간연장 및 영구점용기허가 사항

소재지	지 번	점용면적(m <sup>2</sup> )		점용목적	허가기간	피 허 가 자		
		일시점용	영구점용			주 소	성 명	
진부면 간평리	597-4	1290	430	공작물설치 (근린생활시설 오수관 매설)	2000. 8. 26 ~ 2004. 12. 31.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대관령빌라3-201	김만겸	
	"	597-39	276		92			
진부면 호명리	1068-3	1152	384		(일시점용기간 : 당초-			2000. 8. 26 ~ 2001. 11. 30. 변경- 2000. 8. 26 ~ 2002. 9. 29.)
	"	849	849		283			
"	860-1	189	63					
"	865	219	73					
"	864-1	189	63					
"	888	558	186					
계	8필지	4,722	1,574					

2. 산정기준 : 면적(㎡) × 공시지가 × 요율(3.0%)


3. 산정기간 : 2002. 1. ~ 2002. 12. 31.

4. 점 용 료 : 공시지가 - 7,990원(인근지번 597-6)

일시점용 - 4,722㎡ × 7,990원 × 0.03 × 9/12 = 848,890원

영구점용 - 1,574㎡ × 7,990원 × 0.03 = 377,280원

합 계                    1,226,170원

평정자 : 건설과 지방행정7급 여경은 

민원서류

처리기한: 5일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				처리기간
				5 일
신청인	성명 (법인의명칭)	김만경	주민등록번호 (법인용 대표자의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좌천리 좌천1길 201	전화번호	776-1228
허가연월일및번호		2000년 8월 26일 (제 7-9 호)		
점용(행위)위치		경상북도 경주시 좌천리 좌천1길 201		
점용(행위)내역		점용(행위)면적	㎡	
점용(행위)기간		2000년 8월 26일부터 2002년 11월 30일까지 (간)		
연장기간		2002년 12월 1일부터 2002년 9월 29일까지 (간)		
연장사유		사업이전용		
<p>하천법 제33조제1항(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3항(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p>				
결과장	2002. 6. 2	장관 (국인)	담당	2002년 6월 7일
		신청인 김만경 (인)		
평창군 수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새세기 신사고 활기찬 평창"

평 창 군

우 232-800 / 강원도 평창 평창 하리 210-2 / TEL(0374)330-2497 / FAX330-2595  
 건설과(본청 1층) 과장 : 박현창 지방토목주사 : 장근용 담당자 : 김재열

문서번호 건설 58170 - 1735

시행일자 2002. 6. 4.

공개여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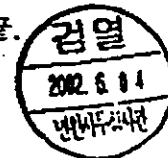
발용 진부면 간평리  
 강상욱외 5명

보존기간		군 수	
공개여부	공 개	김재열	
부군수	결 결		
과 장	박현창		
기 안 자		담 당자 김재열	협조
심 사 자	장근용	심사일	2002.6.4

제목 민원사안 회신

1.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강상욱님을 비롯한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외 5인의 주민들께서 민원제기하신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575-3번지 일대에 제2종근린생활 및 숙박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와 관련 부대조건사항인 오수정화시설물 매설에 따른 하천공작물 설치기간 연장건의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귀하들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하천공작물 설치허가기간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기간연장을 하지 못한 것일뿐 하천공작물 설치를 위한 사전 자재구입과 시공계약등을 한점을 미루어 볼 때 허가기간 연장 요청의 타당성이 인정되기에 귀하들께서 확약한바와 같이 본 하천공작물 설치건으로 인하여 집단민원등이 발생될시에는 즉시 허가취소하고 원상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하천공작물설치허가기간을 연장토록함을 알려드리니 조속한 시일내 하천공작물설치허가(연장)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



평 창 군 수

## 평창군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

- 개최일시 : 2002. 6. 3. 09:30
- 안 건 : 건축허가(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와 관련  
하천공작물설치 기간연장에 따른 민원처리 결정 심의
- 제안자 : 건설과장  
상기 안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함

의 결	가 부 비 고
-----	---------

평창군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 : 부군수

심 의 위 원		심 의 결 과		
직 위	성 명	건축물허가(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와 관련 하천공작물설치 기간연장에 따른 민원 처리 결정 심의		
		가	부	비 고
기획실장	권순철	0		0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명덕	0		0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0	0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0		0
재무과장	김일래	0		0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0		0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0		0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0		0
건설과장	박현창	0		0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0		0
보건사업과장	조규식	0		0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0		0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0		0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0		0

"새세기 신사고 활기찬 평창"  
평 창 군

우 232-807 / 강원도 평창 평창 하리 210-2 / TEL(0374)330-2497 / FAX330-2595  
건설과(본청 1층) 과장 : 박현창 지방토목주사 : 장근용 담당자 : 여정은

문서번호 건설 58170 - 1688  
시행일자 2002. 5. 30.  
공개여부 ( )  
발용 받는곳 참조

보존기간		군 수	
공개여부	공 개	2002. 5. 30	
부군수	기간연장		
과 장	박현창		
기 안 자	(인)	담당	(인)
심 사 자	전복근	심사일	2002. 5. 30

**제 목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통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평창군민원  
소성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최일시 : 2002. 6. 3. (월) 09:30
2. 개최장소 : 소회의실
3. 목 적 : 건축허가와 관련 하천공작물설치 기간연장에 따른 민원처리 결정
4. 참석대상 : 위원장(부군수) 및 위원(실과소장)

붙 임 : 건축허가와 관련 하천공작물설치 기간연장에 따른 민원처리 결정심의(안) 1부 끝.

평 창 군 수  
받는곳 : 노, 로

건축허가(근린생활 및 숙박시설) 허가와 관련  
하천공작물설치 기간연장에 따른 민원처리 결정심의

□ 민원요지

○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575-3번지 일대에 제2종근린생활 및 숙박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와 관련 부대조건사항인 우수정화 시설물 매설에 따른 하천공작물 설치기간 연장 건의

□ 민원발생 개요

-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대관령빌라 3-201 거주 김만경외 6인이 간평리 575-3번지 일대에 근린생활 시설 및 숙박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한 건축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 당시 본 위치는 진부면 상수원 상류지역으로서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어 하더라도 건축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코저 상수도 접합정(오대천교 부근) 하류지역까지 우수관로를 매설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하여 이를 이해하고자 하천부지 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를 득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음
- 하천부지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신청시 진부면 하진부리 대관령빌라 3-201 거주 김만경과 간평리 575번지 거주 강상욱외 5인이 별도로 신청을 해옴에 따라 서류검토결과 설치 위치와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예산 절감은 물론 하천유지관리 차원에서 김만경과 강상욱외 5인이 서로 협의하여 우수관을 1개소만 설치토록 권장하여 모두가 이에 동의할 하였기 김만경에게 허가를 해주어 허가증을 교부하였음.
- 하천부지 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아 그 허가기간내에 공작물 설치행위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일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바 이를 이행치 않았기 다시 본 지역에서 공작물 설치행위를 할 경우에는 신규사업으로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행위가 제한된 상태임

□ 그동안 추진경위

○ 건축관련

- 2000. 4. 27. : 건축허가신청
- 2000. 9. 29. : 건축허가
- 2001. 8. 29. : 건축허가 연기신청
- 2002. 9. 29. : 건축(연장) 허가



- 하천관련

- o 2000. 8. 2. : 하천부지 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신청
- o 2000. 8. 9. : " " 점토요청(건설⇒도시경제)
- o 2000. 8. 11. : " " 점토회시(도시경제⇒건설)
- o 2000. 8. 16. : " " 보완요청
- o 2000. 8. 18. : " " 보완제출
- o 2000. 8. 26. : 하천부지 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 하천부지 점용 : 2000. 8. 26 ~ 2004. 12. 31.
  - 공작물 설치 : 2000. 8. 26 ~ 2001. 11. 30.
  - \* 허가사항 : 이중벽 P.E관(Ø450mm) L= 1623m  
맨홀(1.5×1.5×2.45) 34개소  
홍관(Ø450mm) L=50m

- 2001. 3. 3. :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 관련법규

- 하천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 : 점용허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 만료일전까지 연장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함
- 수도법 제5조제4항제3호의 규정 :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토지의 굴착·성토·기타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한됨 (보호구역 지정전에 설치허가를 받았더라도 설치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하천공작물 설치행위는 제한됨)

□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 본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인들이 제기한 것처럼 주목적사업인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이에 따른 부대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또한 공작물 설치를 위한 사전 자재구입과 시공계약등을 한점을 미루어 불대 하천공작물 설치허가기간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기간연장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행위제한을 받는다 하더라도 민원해소를 위하여 하천공작물 설치허가 기간을 연장해 준 것인가의 여부

④실무종합심의회 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 (민원조정위원회 의 설치·운영)** 1.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에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처리주무부서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2.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3.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4. 심의결과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와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5. 기타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당해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를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종전에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되는 것으로 처리된 민원과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는 당해 행정기관의 부기관장이 주재하고 처리주무부서의 국장과 관계부서의 국장 및 감사담당관(기관의 실정에 따라 이를 달리할 수 있다)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을 심의·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기관의 국장(기관의 실정에 따라 이를 달리할 수 있다)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거나 민원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 (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 의 심의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에 의 재심의에서도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 그 적정여

## 하천공작물 설치 기간연장에 따른 민원처리계획

### □ 민원요지

-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575-3번지 일대에 제2종근린생활 및 숙박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와 관련 부대조건사항인 오수정화 시설물 매설에 따른 하천 공작물 설치기간 연장 건의

### □ 민원발생 개요

-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대관령빌라 3-201 거주 김만겸외 6인이 간평리 575-3번지 일대에 근린생활 시설 및 숙박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한 건축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 당시 본 위치는 진부면 상수원 상류지역으로서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건축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코저 상수도 접합정(오대천교 부근) 하류지역까지 오수관~~호~~를 매설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하여 이를 이행하고자 하천부지 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를 득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음
- 하천부지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신청시 진부면 하진부리 대관령빌라 3-201 거주 김만겸과 간평리 575번지 거주 강상욱외 5인이 별도로 신청을 해옴에 따라 서류검토결과 설치 위치와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예산 절감은 물론 하천유지관리 차원에서 김만겸과 강상욱외 5인이 서로 협의하여 오수관을 1개소만 설치토록 권장하여 모두가 이에 동의를 하였기 김만겸에게 허가를 해주어 허가증을 교부하였음.
- 하천부지 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아 그 허가기간내에 공작물 설치 행위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일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바 이를 이행치 않은 상태임

### □ 그동안 추진경위

#### - 건축관련

- 2000. 4. 27. : 건축허가신청
- 2000. 9. 29. : 건축허가

- o 2001. 8. 29. : 건축허가 연기신청
- o 2002. 9. 29. : 건축(연장) 허가

- 하천관련

- o 2000. 8. 2. : 하천부지 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신청
- o 2000. 8. 9. : " " 검토요청(건설⇒도시경제)
- o 2000. 8. 11. : " " 검토회시(도시경제⇒건설)
- o 2000. 8. 16. : " " 보완요청
- o 2000. 8. 18. : " " 보완제출
- o 2000. 8. 26. : 하천부지 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 하천부지 점용 : 2000. 8. 26 ~ 2004. 12. 31.
  - 공작물 설치 : 2000. 8. 26 ~ 2001. 11. 30.
  - \* 허가사항 : 이중벽 P.E관(Ø450mm) L= 1623m  
 맨홀(1.5×1.5×2.45) 34개소  
 흙관(Ø450mm) L=50m

□ 관련법규

- 하천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 : 점용허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 만료일전까지 연장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함

□ 처리계획 (안)

- 본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인들이 제기한 것처럼 주목적사업인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이에 따른 부대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또한 공작물 설치를 위한 사전 자재구입과 시공계약등을 한점을 미루어 불때 하천공작물 설치허가기간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기간연장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원할한 민원해소를 위하여 하천공작물 설치허가 기간을 연장토록 해줌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민원서  
처리기한: 2002. 6. 7

- 건 의 서 -

군민을 위해 연일주야로 업무에 여념하시는 군수님이하 각관계장님들께 우선 깊은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575-3,575번지(지목:잡종지)에 2000년 9월 29일자로 제2종 근린생활 및 숙박시설을 득하고, 건축허가 부대조건으로 국도6호선 가감차선공사 및 우수관 매설공사를 완료하고 토지의 성토작업과 사업부지 후면 경계선 토사 및 우수유출을 막기 위한 콘크리트옹벽공사 및 우수관 매설공사를 완료하고 건축허가 기간이 초래되어 2001년 9월 27일 건축허가 기간 연장신청(2002년9월28일까지)을하고 2001년 10월달에 건축허가 부대조건 사업으로 사업부지내에서 정화된 오수를 취수원 하류까지 방류처리를 위한 하천공작물설치를 하기위해 수도계에 방문하여 절차를 받는 과정을 추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자재를 준비완료하고, 우수관매설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안 행위허가 및 비산면지발생사업신고를 하였으나 비산면지발생사업 신고는 처리되고, 상수원보호구역안 행위허가신청은 반려된바, 관계부서에 알아본 결과 하천점용기간은 2004년 12월 31일까지이고, 이에 따른 하수관매설 공작물설치공사기간은 2001년 11월 30일까지로 공작물설치허가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저희 민원인이 전혀 몰랐던 이유는 당초 건축허가를 득할 당시 준 농림지역으로 건축허가를 득하는 데는 별다른 법적 제한이 없지를 아니 하였습니다. 다만 차후에 이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될 경우를 사전에 대비하여 환경보호차원에서 저희민원인이 사비를 투자하여 우수관을 취수장 하류까지 방출하여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안가고, 차후에라도 주변주민들에게 도움이되리라 생각하여 관로매설을 하기로 하고, 강상욱외5인이 하천점용 및 하천공작물설치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저희사업부지에 근접해있

주요 민원  
처리책임자: 이천영


선	부	주	결	과	장
1일시	2002. 5. 22	4431	결재(공란)	담당주서	
	건설과				


는 현재 골재 채취장(김만겸)도 건축허가 및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허가를 신청중에 이어서 군 관계부서에서 업무처리 및 사후관리차원에서 공작물설치관로매설을 관로의 용량을 늘려 통합해서 매설을하면 사업비도 공동부담 하니까 절감되고 하여 저희사업 부지대표로 강상욱과 김만겸씨가 군 관계부서에서 협의를 하고, 지금까지 저희는 건축사업을 준비해오던 중에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공작물설치기간 만료를 알지 못했던 이유는 도로점용허가와 건축허가는 저희 개개인 앞으로 허가서 및 보완공문서가 발송되어 개개인이 수령하여 알 수 있어서 지금까지 조치를 취해 왔으나, 하천점용 및 공작물설치허가서는 김만겸 개인으로 허가조치가 되고, 허가서 및 공문 또한 김만겸1인에게 통보가되어 저희사업주 강상욱외5인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2001년 10월에 상.하수도계에 관로매설공사 신청 전으로 실무 담당자를 방문하여 면담시그런내용을알려줄수도있는사항이고관계부서에서도 건축허가 연장시, 또는 공작물설치허가 만료 임박시에 타인에게 통보사항이라고 저희 건축주들은 생각되며, 건축허가서부터 부대조건인 모든 사항이 지금껏 우편 또는 통신으로 단 한건이라도 수차에 걸쳐 보완조치통보가 왔었는데 이번엔문제가 된 공작물설치허가 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서에서도건축주6인에게는 어떠한 통보도 없었습니다. 저희건축주6인은 건축허가기간이 2002년 9월 29일까지이고, 하천점용기간은 2004년12월31일까지이며, 도로점용시행 일자도 5년인바, 주사업목적이 건축이고, 건축허가당시 향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될것을 대비하여 여러조건을 수립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이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이미 건축허가를 득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여러가지로 관련부서에서는 아직 건축 본 공사가 착공이나 완공도 되지아니 하였는데 새로운조례법령에 의해서만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민원인들에게 이중,삼중으


로 부담을 주는 행정으로 느껴지고 건축기간도 부대조건에 의해 연장되었기에 이와 같은 행정조치가 이해하기 어려워서 부군수님 이하 각부서장님과 실무자들하고 수차례에 걸쳐 면담도하고 호소도 해보았으나, 어떠한 만족스런 결과가 없어서 저희민원인 6인이 군수님께 이렇게 건의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민원인들은 건축사업이 목적이저 그에 따른 부수적인 행정에는미흡하여관계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바, 주된 목적인 건축허가에 있어서 여러 복잡한 부수적인 행정조건에 다소 소홀함이 있어서, 군 행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민원인에게 나아갈 법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업을 이행하지 않고 사업 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면 당연히 허가취소 처분이 옳다고 봅니다. 하지만 많은 비용을 들여 지금까지 공사를 추진해왔고 공작물 설치허가기간이 만료 된 것도 모르고 불임과 같이 건설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해동기부터 공사 시작하려고 모든 인력과, 장비 및 자재를 이미 확보해서 사업부지에 쌓아놓고 인력들은 사개월째 공사도 못하고 현지에서 마냥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루하루 지연되면, 지연이 될수록 막대한 경비가 지출되고, 이 상태로 가다 주목적인 건축허가 기간마저 만료가 되어 취소가 되면, 계약체결 된 건설회사와 법정에까지 가야 되고, 민원인6인은 생계에까지 타격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이 한순간에 아가게 됩니다. 또한 개인손실이전에 군, 국가적으로 손실이라고 봅니다. 또 이민원인들 중에는 이곳에 지역 농, 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여 타지역 도, 시민들을 유치하기위해 관광회사와 이미 계약체결을 하여 이곳에 들러 지역주민들이 생산한 농, 특산물을 판매하게 하여 지역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이 지역을 홍보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부디 저희 원인6인들의 소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바쁘신 군정에 겨를이 없으시더라도 부디 현명한 방안을 제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2년 5월 22일


민원인 - 건축주 : 강 상 옥 

이 규 옥 

김 양 겸 

김 경 자 

강 영 숙 

조 강 호 

붙임: 공사 계약서(오·폐수공사, 토목공사, 건축공사)  
자재 구입서  
현장 사진

평 창 군 수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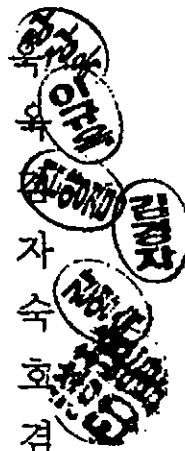


# 확 약 서

- ※ 사업의 종류 : 건축 및 하천공작물 설치
- ※ 사업장 위치 : 진부면 간평리
- ※ 내 용 : 민원인 6인이 건축허가를 득한 지역이 현재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기에 공사도 중 상수원에 막대한 오염이 되는 일이 발생되거나 대규모 집단 민원이 발생될시 이를 규명하고 피해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없을시 군의 지시를 받아 공사를 중단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

2002년 5월 22일

확약인 : 강 상  
이 규  
김 양  
김 경 자  
강 영 숙  
조 강 호  
김 만 겸



평창군수 귀하